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93 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이연희·이광희·박상혁

허종식 • 이인영 • 김윤덕

김남희 · 임미애 · 송재봉

서미화 • 이춘석 • 한민수

정준호 • 이정문 • 이강일

복기왕 • 한준호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인중개사법」 제25조의3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, 「국세 징수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임차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이 있음.

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

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892호),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89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것임.

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2항제1호 중 "임대차계약자 본인"을 "임대차계약자 본인,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2(전입세대확인서의 열	제29조의2(전입세대확인서의 열
람 또는 교부) ① (생 략)	람 또는 교부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	②
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	
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	1
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, 임차	
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, 매매	
계약자 또는 <u>임대차계약자 본</u>	임대차계약자 <u>본</u>
<u>인</u>	인,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을
	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